

부산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가단312674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형주

피 고 B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주연

변론 종결 2020. 6. 4.

판결 선고 2020. 7.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30,811,71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6.부터 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0. 5. 16.부터 별지 목록 제1설비 및 제2설비(이하 '이 사건 각 설비'라 한다)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9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사회복지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09. 8. 1. D조합(이하 '이 사건 D조합'라고 한다)와 피고 E건물에 관한 주차관리계약(이하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주차관리용역을 수행하던 중, C의 비용으로 주차관제 및 CCTV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하되 그 비용은 5년간 감가상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C은 2009년 8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피고 건물의 주차관리를 위해 139,957,000원의 비용을 들여 주차관제 및 CCTV 시스템인 이 사건 각 설비를 설치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30. 피고와 F 주차장 등의 시설 및 경비에 관한 통합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통합관리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이에 따른 관리용역을 수행하였고, 2011년경 C의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1. 원고와 이 사건 통합관리용역계약에 따른 주차관리와 함께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상의 주차관리까지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되, 그 계약기간은 위 통합관리용역계약에서 보장한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2016. 6. 30.로 정하고, 원고는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피고에게 위 주차장 등의 시설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설비의 사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과 사이에 체결된 약정에 따라 병원 주차장 내에 2010. 7.경 별지 목록제1설비를

설치하면서 130,277,000원 상당의 공사비를, 2009. 8. 18.경부터 2010. 5.31.경까지 별지 목록 제2설비를 설치하면서 9,680,000원 상당의 공사비 또는 구입대금을 각 지출하여 총 139,957,000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설비는 원고의 소유이고, C과 D조합, 원고와 C,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설비에 대한 약정은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으로서 담보권실행을 위한 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설비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통합관리용역계약의 종료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2016.12. 1.부터 현재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설비를 사용·수익하고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이 사건 각 설비의 잔존가액 29,441,970원, 2016. 12. 1.부터 2020. 5. 15.까지의 차임 상당액 33,118,544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20. 5. 16.부터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월 798,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제10조-1 제1항 본문은 '이 사건 각설비는 C의 비용으로 설치하며 설치비용은 5년간 감가상각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 사건 각 설비 설치비용에 관하여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감가상각 종료 후 이 사건 각 설비는 이 사건 D조합의 소유로 한다.'라는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1년경 C의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한 사실, C 및 원고가 5년 이상 E건물 등 주차관리계약상의 주차관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설비는 늦어도 이 사건각 설비의 설치종료일인 2010. 6.경부터 5년이 경과한 2015. 6.경부터는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설비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각 설비에 대한 약정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 또는 원고가 채권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D조합 또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나. 원고 지출 비용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6. 30.경 피고의 병원 주차장 내 정산소 파손 수리비로 59,224,000원을 지출하고, 신규 주차권 교체비용으로 9,027,200원을 지출하여 총 68,251,000원 상당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지출 비용 68,2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주차장 내 정산소 파손 수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원고 또는 C이 신규 주차권 교체비용으로 9,027,200원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위 정산소 파손 수리비 중 10,000,000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사실, C은 2010. 7. 12.경 이 사건 D조합을 경유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시설비 139,957,000원 및 2010. 6. 6.자 사고로 인한 손실비용 59,224,000원에 관하여 'C은 이 사건 각 시설 설치비용 및 기타비용으로 189,181,000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므로, 5년간의 장기계약을 통하여 일부 비용을 충당하고, 5년간 계약 이후 정산되지 않은 비용은 당 재단이 병원 측에 기부채납하거나 후임업체와 협의하여 정산토록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희진

별지

목록

제1설비(원고가 2010. 7. 경 설치한 설비)

1. 논스톱패스(LPR) : 4세트
2. 전산프로그램개발 : 1식
3. CCTV/DVR : 7세트
4. 차단기 : 1세트 등

제2설비 (원고가 2009. 8. 18.경부터 2010. 5. 31.사이에 구입하였거나 설치한 설비)

1. PX-400(B)이어폰/휴대멀뎡
2. 무선LED 설비
3. 응급호출(LED) 설비
4. 요금계산 정산판독기

끝.